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22415-	(제안번호)	(제안번호)	(제안번호)	(제안번호)										
처리기간	1977. 7. 20														
시행일자	1977. 7. 20														
보존년한															
보조기관	제2부서장				법무담당관										
	도시계획과장				심사관										
기안책임자	김광선	김광선	김광선	김광선	김광선										
경수참	유진조	발신	통제	1977. 7. 21											
제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적승인														
제 1 안	내부결재														
<p>1. 건설부 고시 제137호 (77. 7. 9)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 변경 결정 내역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41호 (77. 3. 16)의 규정에 위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고 별안과 같이 시행요지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적승인 조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변경구분</td> <td>위</td> <td>척</td> <td>면적(㎡)</td> <td>비고</td> </tr> <tr> <td>주거→공업</td> <td>동대문구 연북동</td> <td>1049㎡대</td> <td>약 21.950</td> <td></td> </tr> </table> <p>첨부 1. 건설부 고시 1부 2. 관계 도면 1부</p>						변경구분	위	척	면적(㎡)	비고	주거→공업	동대문구 연북동	1049㎡대	약 21.950	
변경구분	위	척	면적(㎡)	비고											
주거→공업	동대문구 연북동	1049㎡대	약 21.950												
제 2 안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적승인															

1. 건설부 고시 제 137호 (77.7.9)로 일부변경 결정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건설부 고시 제 41호 (77.3.16)에 의거 조사한다.

2. 관계되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정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발령한다~~

발령일자	1977.7.27	제 221호
담당차	법제과장	법무담당관
1977. 7.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적승인 조서

변경 구분	위	리	면적 (㎡)	비고
주거 → 상업	홍대동	연동동	1049	21,950

(도면 생략)

제 3 안  
 구 소 건설부 장관 발신 시장  
 제 목 등 간

1. 건설부 고시 제 137호 (77.7.9)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된 일부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건설부 고시 제 41호 (77.3.16)의 규정에 의거 변경 고시 후 사본 및 도면 표시와 같이 지적승인 하였고 보고 합니다. 청 부 고시본 사본 및 도면 1부

제 4 안  
 구 소 구획정리과장 발신 과장  
 제 목 등 간

1. 영시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역이 건설부 고시 제 137호 (77.7.9)로 변경 결정된 지역에 대해 지적승인 하였고 귀과에 통보하오니 양부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 부 고시본 사본 및 도면 1부

결재  
7.21

제 5 안

수신 동대문 구청장

발신 시장

참조 도시정비과장

제 목 동 건

1. 건설부 고시 제137호 (국. 7. 9)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된 지역에 대해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 표시와 같이  
 지적 승인 하역기 <sup>출보하기</sup> 관계도서를 귀청에 비치하여 호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할것이며 제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에 안전을 기하기 바랍.

참 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제 6 안

수신 총무처 장관 (시: 문화공보실장)

발신 시(의)장

제 목 관(시)보 게재 의뢰

다음과 같이 관(시)보 게재를 의뢰 함에 게재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시)보 게재 구분: 고시

나. 관(시)보 게재 간명: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적 승인

다. 법적 근거: 도시계획법 제13조

참 부 고시문 사본 2부 (1부)